

• 소통의 연수 • 통합의 연수 • 안전한 연수



연수구보



발행 · 편집인: 연수구청장 / 발행처: 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(우)21967 ☎ 749-7392 / FAX 749-739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부록 제1362호 2023. 2. 6.(월)

【공 고】

-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-220호(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) 1

회							
람							

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

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2월 3일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를 위한 생신위문품 지급 근거 마련

2. 주요내용

- 생신위문품 정의 신설(안 제2조제3항)
- 참전유공자 생신위문품 지급 신설 : 5만원 범위 내(안 제4조제4호)
- 지급방법 신설(안 제5조2에 제4항)
- 상위법 제명, 띄워쓰기 준수 및 잘못된 표기 수정(안 제1조, 안 제2조1호, 안 제4조제1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3. 2. 23.(목)**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(참조: 복지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(법인명)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○ 주 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(동춘동 923-5번지)

○ 연 락 처 : 전화 749-7631 FAX 749-7629

○ 홈페이지 : <http://www.yeonsu.go.kr/>

라. 제출서식

개 정 (안)	사 유(구체적으로)
	(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)

4. 참고자료

○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: 붙임

【붙임 1】

**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6.25 전쟁을 “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6·25전쟁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참전유공자”란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”를 “참전유공자”란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생신위문품”이란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물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”을 “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참전유공자 생신위문품 지급 : 5만원 범위 내

제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신위문품은 참전유공자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하며,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조제1항제4호 개정규정에 따른 생신위문품의 지급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상 생일인 참전유공자부터 적용한다.

【붙임 2】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라 6.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명예 선양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라 6.25전쟁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참전유공자”란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	1. “참전유공자”란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----- -----.
2. (생략) <u><신설></u>	2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지원사업) ① <u>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</u> 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4조(지원사업) ① <u>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</u> ----- ----- --.
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(생략)	4. <u>참전유공자 생신위문품 지급 : 5만원 범위 내</u>
② · ③ (생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제5조의2(지급방법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	제5조의2(지급방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	④ <u>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신위문품은 참전유공자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하며,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u>